감사규정

제 정 2005. 10. 19 개 정(1) 2007. 2. 2 개 정(2) 2013. 4. 15 개 정(3) 2016. 2. 4 개 정(4) 2020. 5. 28 개 정(5) 2020. 9. 29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법 제19조 제3항 및 정관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감사의 직무) ①감사는 공사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독립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1. 공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
- 2.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
- 3. 운영위원회가 의뢰하거나 사장이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
- 4.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
- 5. 외부감사인 활동에 대한 평가
- 6.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- 7. 감사실 직원의 보직, 이동 등 인사 요청 및 근무평정
- ②감사는 임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,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감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사의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한 사장 결재 서류 중 공사 경영상 중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이 이를 감사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감사 부재시 업무처리) 감사가 휴가, 출장,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부재

시에는 문서관리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장이 그 업무를 대결할 수 있다.

제2장 내부감사기구

- **제4조(내부감사기구)** ①사장은 공사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공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모두 감사의 소속 하에 둔다.
 - ③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실을 두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④감사실에는 1명 이상의 전문 감사인력과 투자분야 전문가를 각각 충원·유지 하여야 한다.
 - ⑤제4항에서 전문감사인력이라 함은 공인회계사(CPA), 공인내부감사사(CIA),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(CISA), 공인재무분석가(CFA) 등 감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거나, 감사전문기관 또는 공사 감사실 등 감사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.
 - ⑥제4항에서 투자분야 전문가라 함은 공사 투자운용부문 또는 외부 금융기관의 투자운용 부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.
 - ⑦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충원할 수 있다.
- **제5조(감사실 직원의 자격)** ①감사실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.
 - 1.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
 - 2.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전문 공인자격증 소지자
 - 3. 기타 감사가 감사실 직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 -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2.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
 - 3.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
- 제6조(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이동) ①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이동은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. 다만 지체 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감사실 직원은 3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승진전보 또는

- 인사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③감사실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7조(감사인의 의무) 감사 및 감사실 직원(이하 "감사인" 이라 한다)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기가 수행한 직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.
 - 1. 감사인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 - 2.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3. 감사인은 공사 또는 임직원의 위법·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4. 감사인은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일체의 행위와 금품,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감사인의 권한)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증명서, 확인서, 의견서, 문답서 및 기타 관계 자료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
 - 2. 관계자의 출석·진술요구
 - 3. 금고, 장부,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
 - 4.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
 - 5.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정보요구 등) ①감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정보에 대한 자료제 출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.
 - ②감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- 제10조(감사실 직원의 대우) ①감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사장은 감사실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근무평정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

수 있다.

③감사실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자로서 합당한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경우 희망 부서 전보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3장 감사결과 처리

- 제11조(감사결과에 대한 조치) ①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사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.
 - 1. 규정·제도 또는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
 - 2.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
 - 3. 관계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
 - 4.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조치
 -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(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 등으로 구분)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,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 - ③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감부서로 하여 금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토록 요구할 수 있다.
 - 1. 증거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
 - 2.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즉시 고발 또는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- 3.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제11조의2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) ①감사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,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한다.
- 제12조(조치결과 통보) ①사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사장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장에 게 재요구를 할 수 있다.
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조치결과 확인) 감사는 차기 감사 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이의신청) ①사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재차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는 재심사요구를 받았을 때에 는 의견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제4장 보고

- 제15조(종합감사보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)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를 종합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 또는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6조(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)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사고보고 및 범죄 등 발생의 통보) ①감사는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외의 자가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, 권유, 청탁등을 받아 위법·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공사 또는 공사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사고금액(피해예상금액 기준)이 3억원 이상인 경우
 - 2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, 저축관련 부당행위,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 - 4.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

으키는 경우

- ②사장은 제1항에 열거된 사고보고 및 범죄 등 발생통보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1.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을 때
- 2. 현금, 물품,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

제18조(문서의 명의) 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명의로 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19조(감사인에 대한 감독)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의 감독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.
- 제20조(외부감사의 총괄) 공사가 받는 외부 감사업무 중 재무 및 회계감사와 이 규정에 의한 감사의 직무에 관련되는 업무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.
- 제21조(제재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사장에 게 요구할 수 있다.
 - 1. 사고보고 등의 보고사항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체한 자
 - 2. 감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자
 - 3. 규정 제8조에 의한 감사인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
 - 4.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 조치를 타당한 사유 없이 태만히 하는 자
- 제22조(자체감사) ①감사는 부당업무행위 및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23조(시행세칙제정) 감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24조(타 규정과의 관계) 감사 직무에 관련되는 다른 규정 중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5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